■ 대학설립·운영 규정 [별표 1의2] <개정 2023. 9. 19.>

##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(제2조의2제1항 관련)

구분	대학원 신설	석사과정 학과(전공) 신설	박사과정 학과(전공) 신설
일반대학원		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	<ul> <li>7명 이상의 관련 분</li> <li>야 교원 확보</li> <li>전체 학점수를 기준</li> <li>으로 교원의 강의</li> <li>비율 60% 이상</li> </ul>
전문대학원	대학에 두는 전문대학 원의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전단 및 제6조 에 따라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,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 는 100명으로 본다.		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
특수대학원		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	